

『서울대학교 法學』 편집위원회 규정

1994. 11. 23. 제정
2006. 2. 28. 전문 개정
2007. 12. 8. 개정
2016. 4. 18. 개정
2016. 10. 31. 개정
2017. 10. 30. 개정
2019. 3. 28.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법학연구소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서울대학교 법학(Seoul Law Journal)』(이하 법학지라 한다)의 학문적 질과 이론적 수준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하게 우수한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 발전시키고,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편집위원장은 교수인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학연구소장이 위촉·임명한다.
- ④ 법학연구소의 간행부장 및 연구부장은 그 임기 동안 편집위원을 겸한다. 간행부장인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고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 4. 18. 개정>
- ⑤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겸임연구원, 공인된 국내외의 대학의 법학전임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 종사자 중에서 선임된다.
- ⑥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법학지 속표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⑦ 법학연구소장은 편집위원으로의 위촉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 실적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편집위원회에는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가 발행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 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4.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

<2019. 3. 28. 개정>

제4조 (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분기당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법학연구소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회의를 주재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편집부위원장, 법학연구소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16. 10. 31. 본항 개정, 2017. 10. 30. 단서 신설>

제5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명예와 비밀의 보장)

- ① 각 편집위원들은 연구소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비밀은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편집실무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편집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5인 내외의 편집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편집실무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편집

위원장은 편집실무위원을 겸한다. <2016. 4. 18. 개정>

제8조 (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法學』 발행규정

2006. 2. 28. 제정
2008. 6. 17. 일부 개정
2016. 11. 25.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학지의 간행)

- ① 법학지는 연 4회 발간한다.
- ② 법학지의 발간일자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 ③ 법학지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접수일(2***년 *월 *일), 심사완료일(2***년 *월 *일), 게재확정일(2***년 *월 *일)을 기재한다. <2008. 6. 17. 신설>
- ④ 법학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제3조 (별쇄본 및 전자출판)

- ①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법학지 2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 다만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부담 하에 추가 제공할 수 있다.
- ③ 법학지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한다. 전자 출판의 경우에도 원문과 초록을 함께 제공한다.
- ④ 원고제출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한 논문 기타 원고를 인터넷, CD-ROM 기타 모든 전자적 매체에 의한 전송 및 배포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에 관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2016. 11. 25. 개정>

제4조 (개정)

본 발행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法學』 투고규정

2006. 2. 28. 제정	2015. 2. 27. 개정
2008. 12. 12. 개정	2016. 11. 25. 개정
2009. 3. 13. 개정	2017. 2. 23. 개정
2012. 3. 9. 개정	2017. 5. 26.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될 원고의 작성 및 투고 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 2. 23. 개정>

제2조 (원고의 작성)

- ①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 서평, 번역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 ②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괄호 안에 영문(기타 구미어도 포함 이하 동일) 제목 표기}, 성명(괄호 안에 영문성명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자택)와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다만 제목을 영어 아닌 구미어로 표시하는 때에는 영문 제목도 함께 기재한다. <2015. 2. 27. 개정>
- ③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기존에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④ 논문의 경우,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 ⑤ 논문, 판례평석의 경우 원고의 핵심내용을 지칭하는 국·영문 키워드를 첨부한다.
- ⑥ 원고의 분량은 글자수 30,000자에서 60,000자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2016. 11. 25. 개정>
- ⑦ 초록의 분량은 글자수 800자에서 1,000자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영문초록도 이에 준한다. <2016. 11. 25. 분항 신설>

제3조 (원고제출과 접수)

- ① 투고자는 원고파일을 원고마감일까지 당 연구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파일에 투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 심사용파일을 원고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2. 12. 개정; 2017. 5. 26. 개정>

- ② 동일기관 소속 투고 비율이 전체 투고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 소속 투고에 대해 투고 순서 또는 편집위원회가 달리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017. 2. 23. 본항 신설>

제4조 (각주표기요령)

- ① 필자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필자가 복수인 경우 필자의 이름을 모두 밝히고, 제1저자, 제2저자 등을 표기한다.
 - 2. 기관 저자일 경우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 ② 문헌명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저서, 논문집, 기타 문헌에 관계없이 책자의 명칭에 대한 표기는 국문인 경우 **고딕**으로 영문인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2. 논문, 기타 책의 일부로서 발표된 모든 글(신문기사 포함)에 대한 표기는 그 글의 제목을 “ ” 안에 포함시킨다.
- ③ 발행년월일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저서 및 기타 단행본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 2. 연간 간행물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 3. 논문집 기타 연 2회간 이상 월간까지의 정기간행물인 경우, 권·호수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이 경우 발행년월을 표기할 수도 있다.
 - 4. 주간지 및 일간지인 경우, 발행년월일을 표기한다.
- ④ 쪽수를 표기함에 있어서 국문 문헌인 경우 ‘쪽’, ‘면’ 또는 ‘p.’, ‘pp.’를 혼용하고 영문 문헌인 경우는 ‘p.’, ‘pp.’로 표기한다. <2009. 3. 13. 개정>
- ⑤ 인용문헌별 표기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오도록 하되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1. 저서
 - 가. 요령
 - i) 국문, 일본어 및 중국어 저서일 경우 책명을 **고딕**으로 표기한다.
 - ii)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나. 예시
 - 1) Michael Byers, *Custom, Power and the Power of Rul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100-121.

2) *Ibid.*

3) 홍길동, **국제법**(우수출판사, 2002), p.10.

4) 상계서, p.20.

5) M. Byers, *supra* note 1, p.141.

6) 홍길동, *supra* note 3, p.21. 또는 홍길동, 전계서, p.21.

2.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가. 요령

i) 논문이 게재된 문헌명은 저서명 표기와 같이 처리한다.

ii) 논문이 게재된 문헌은 그 해당권호와 발행년도(발행년월을 밝혀도 무방함)를 밝힌다.

iii) 반복인용시 저서와 같은 방식에 따르되, 국문인 경우 ‘상계논문’, ‘전계논문’으로 표기한다.

나. 예시

1) 홍길동, “국제법상 침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XX권 제Y호 (2001. 2), pp.100-121.

2) Dieter Papenfuss, “The Fate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GDR within the Framework of German Un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2, No. 2 (1998), pp.467-470.

3. 학위논문

가. 요령

i) 저자명, 논문명, 학위논문의 종류, 학위수여 대학명 및 제출년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ii) 반복 인용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나. 예시

1) 박문수, 국제법상 형평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XX대학교 (2000. 2), p.245.

2) A. Arnold,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Ph. D. dissertation, YY University (1998. 5), p.400.

4. 편집된 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논문 또는 글

가. 요령

i) 해당논문 또는 글의 필자 명, 해당논문 또는 글의 제목, 편집자명, 편집된 저서의 제목을 표기하고 그 이후는 저서의 경우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ii) 반복 인용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나. 예시

1) 이몽룡, “국제법의 법적 성격”, 일지매 (편), 국제법의 이해 (XY출판사, 1999), pp.54-56.

2) John Freid, “How Efficient is International Law?,” in Karl Deutsch and Stanley Hoffmann(eds.), *The Relevance of International Law: Essays in Honor of Leo Gross* (Schenkman, 1968), p.93.

5. 자료

가. 국제사법재판소 및 중재법정 관례

예시: *Application for Review of Judgement No. 333 of the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87), p.22.

나. 일간지

예시: 성춘향, “외국인노동자 문제 이대로는 안된다”, XX일보 (2000. 11. 2), p.14.

다. 기타 자료들은 발행기관명, 자료명, 권호수, 발행년월, 페이지의 순으로 게재한다(권호수 및 발행년월 대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해당자료의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게재한다).

예시: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seventh session, 2 May-21 July 1995, A/50/10, pp.21-24

제5조 (본 규정의 개정)

본 투고 규정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法學』 원고 심사규정

2006. 2. 28. 제정	2008. 2. 28. 개정
2008. 12. 12. 개정	2010. 12. 7. 개정
2012. 11. 30. 개정	2014. 8. 29. 개정
2015. 2. 27. 개정	2015. 8. 20. 개정
2016. 5. 20. 개정	2016. 11. 25. 개정
2017. 11. 17. 개정	2018. 11. 30. 개정
2019. 5. 17.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판례평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료, 서평, 기타 원고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0. 개정>

제2조 (투고 자격 및 게재여부 심사)

- ① 법학지에 게재될 논문은 다음의 투고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게재결정을 얻어 법학지에 게재한다. <2019. 5. 17. 개정>
 1.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연구논문
 2.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3. 공인된 법률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연구논문
 4.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석·박사과정생의 연구논문.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요함 <2014. 8. 29. 단서 개정>
- ② 투고논문은 내용의 적정성과 학문적 수준에 관하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법학연구소의 학술행사에서 외국인이 발표한 논문으로 편집위원회가 필요한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019. 5. 17. 개정>
- ③ 자료, 서평 등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015. 8. 20. 개정>

제3조 (심사대상 투고논문의 제출)

- ① 제2조에 규정된 투고논문은 당 법학연구소의 『서울대학교 법학』의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② 제2조에 규정된 투고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③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에 앞서 논문의 표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검사를 한다. <2016. 11. 25. 신설>

제3조의2 (적합성 심사)

-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합성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 1. 일반적인 학술적 논문형식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 2.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함이 명백한 경우
 - 3. 주제가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4. 그밖에 적합성 심사만으로 게재불가 결정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
- ② 편집위원장은 적합성 심사를 담당할 3인의 편집위원을 지정한다. <2016. 5. 20.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3인의 편집위원 전원이 투고논문이 심사를 받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적합성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필자는 그 이유를 밝혀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이 심사를 받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 ⑤ 편집위원회가 불복을 받아들이는 경우, 제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2015. 2. 27. 본조 신설>

제4조 (심사위원의 선임)

- 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자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016. 11. 25. 개정>
- ② 심사위원 1인당 심사대상 투고논문은 당해 발간예정호당 5편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2016. 11. 25. 본항 신설>

제5조 (심사기준)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제 설정(창의성과 적실성)
2. 연구 관점의 참신성 및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3.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에의 기여도
4. 종합의견
5.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6조 (심사절차)

- ① 각 투고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심사된다.
- ② 심사위원은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평가서에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표제, 심사자의 성명과 소속,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심사개요 및 총평과 제7조 제3항의 결과를 표기한다.

제7조 (심사방법)

- ①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 ③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여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2. 11. 30>
 1. 게재가 : 경미한 보완 포함
 2. 수정 후 본호 게재
 3. 수정 후 차호 재심사 <2008. 12. 12. 개정>
 4. 게재불가
- ④ 각 심사결과가 본조 제3항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⑥ 필자가 심사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사위원들의 종합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게재여부 또는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⑦ 제3항 제3호의 결과를 통지받은 필자가 수정한 원고를 차차호까지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최초 투고논문에 대해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2017. 11. 17. 신설>
- ⑧ 편집위원회의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투고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8조 (심사결과로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② 각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9조 (논문게재절차)

-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② 법학지에 투고된 원고에 대해서는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심사료와 게재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11. 30>

제10조 (게재된 논문의 수정 및 게재취소)

- ① 데이터 또는 그 해석의 오류 등의 사유로 필자가 게재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허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 게재된 논문에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의심이 있거나, 이를 이유로 필자 스스로 논문의 게재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취소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가 수정 또는 게재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차호 법학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2018. 11. 30. 본조 신설>

제11조 (개정)

본 심사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법학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2007. 6. 20. 제정
2008. 6. 17. 전문 개정
2009. 6. 16. 전문 개정
2012. 11. 30. 일부 개정
2013. 5. 31. 전부 개정
2015. 12. 2. 일부 개정
2016. 11. 25. 개정
2018. 4. 24. 개정
2018. 10. 2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법학지에 투고 및 수록되는 학술 논문 등 저작물의 연구윤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의 준수)

- ① 법학지의 편집위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법학지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투고자는 원고를 기고할 때,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본다.
- ④ 법학지의 편집위원회는 법학연구소와 협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2016. 11. 25. 본항 신설>

제2조의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제2장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6. 11. 25. 본조 신설>

제2 장 연구윤리

제1절 투고윤리

제3조 (저자의 투고윤리기준)

- ① 법학지에 투고되는 논문 등은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 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②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된다.
- ③ 타인의 저작물을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④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법학지에 수록될 수 있다. 단, 그러한 작성경위를 적시하여야 한다.
- ⑤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⑥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된다.
- ⑦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⑧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법학지를 포함한 여러 정기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저자결정 및 저자표시기준)

- ①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의 투고·심사·출간 과정에서 법학지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할 저자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윤리

제5조 (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제반 연구윤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3절 심사윤리

제6조 (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위반사실 고지의무)

심사자는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 및 제4조의 각 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윤리위원회

제1절 설치와 운영

제9조(설치와 구성)

- ①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학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법학연구소장, 부소장, 편집위원장, 연구부장, 간행부장, 그리고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하는 본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아닌 인사(부교수 이상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4인 이하) 등으로 구성되며, 법학연구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2018. 10. 29. 개정>

제10조 (위원의 임기)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절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13조 (권한과 의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조사 및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2016. 11. 25. 본절 제목 개정>

제14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개시)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016. 11. 25. 개정>
-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위원(예비조사위원 및 당해 조사 참여자를 포함한다)은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보 사실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었거나 그 밖에 제보자의 신원 노출이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2. 단서 추가>
-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6. 11. 25. 개정>
-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제척·기피·회피)

-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전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 (판정)

-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2016. 11. 25. 개정>

제4절 제 재

제19조 (조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2016. 11. 25. 개정>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법학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3년 이상 법학지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법학지 및 홈페이지에 공지(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소속기관에 통보
 - 6. 관련학회에 통보
 - 7.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② 위원회는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법학연구소를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투고된 논문의 심사단계에서 본 윤리규정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조사결과와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21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20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6. 11. 25. 개정>

제23조 (수당 기타 비용의 지급)

위원 및 위원회의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사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와 관련된 제반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판정이 완료된 후 그 결과는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윤리위원·참고인·기타 조사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5조 (개정)

본 규정은 법학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규정

2013. 11. 29. 제정

2014. 11. 28. 개정

2015. 2. 27.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법학연구소”라고 한다)에서 수여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이하 “논문상”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지)

논문상은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양질의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법학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취지로 한다.

제3조 (시상대상 및 수상자격)

- ① 논문상은 해당연도에 발간된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포함) 중에서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 또는 부교수 이하인 투고자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015. 2. 27. 개정>
- ② 공동저자인 경우 공동수상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저자 모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4. 11. 28. 개정>
- ③ 이미 논문상을 받은 자는 해당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2015. 2. 27. 개정>

제4조 (수상인원)

논문상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논문 투고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선정된 논문 1편에 대하여 매년 1회 시상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 ① 수상논문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학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법학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고 한다)에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
 - 2. 법학연구소 간행부장(편집부위원장)
 - 3. 법학연구소 연구부장
 - 4.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
- ③ 편집위원장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유고일 때에는 간행부장(편집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2항 제4호에 의한 심사위원의 추천 및 위촉은 해당 연도 12월까지로 하며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공자로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매년 수상논문을 정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시상논문 추천)

본교 전임교원(또는 편집위원회 외부 편집위원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년도 수상논문을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수상논문 결정)

- ① 위원회는 수상대상논문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연도 법학지 제4호를 발간한 후에 소집한다. <2015. 2. 27. 개정>
- ② 위원회는 제6조의 추천받은 논문 중에서 수상대상 논문을 표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수상대상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주제의 창의성과 적실성, 연구관점의 참신성 및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수상논문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회는 해당 연도에 수상대상 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의사와 심사경과는 비밀로 하며 결정내용을 미리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위원장은 시상 결정의 결과를 지체 없이 법학연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자 발표)

법학연구소장은 수상논문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수상자에게 수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법학지 제1호에 수상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015. 2. 27. 개정>

제9조 (시상 및 부상)

- ① 시상과 관련된 내역은 차년도 3월에 발행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에 공지한다.
- ②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제10조 (시상의 취소)

편집위원회는 수상논문에 대해 표절 등 연구윤리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

제11조 (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경과규정)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논문상은 2014년 제4호 및 2015년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일반논문 외 원고의 법학지 게재에 관한 지침

2013. 11. 29. 개정

2016. 5. 20. 개정

2018. 4. 24. 개정

1. 외국어 논문

법학지는 외국어 논문을 원칙적으로 게재하지 않으며, 법학대학원에서의 외국어 논문은 Journal of Korean Law에 게재함을 권장함. 다만 법학연구소(법학대학원 포함)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어 논문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법학지 게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2018. 4. 24. 개정>

2. 번역 논문

가. 법학지는 이를 위하여 작성된 신규 논문의 수록만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학술지 등에 외국어로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책자의 일부(이하 번역논문)를 번역 수록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나.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번역논문을 게재할 수 있음.

(1) 이미 학계에서 그 성가가 널리 인정받고 있는 고전적 성격의 학술 저작물.

(2) 일반 학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특수어 논문. 이때 영어와 일본어는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외국어로 취급되지 않음.

(3) 법학연구소(법학대학원 포함) 주최 학술회의에서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의 번역. <2018. 4. 24. 개정>

(4) 법학지 투고를 위하여 신규로 작성된 외국어 논문의 번역.

다. 번역자는 해당논문 저작권자의 법학지 번역수록에 관한 동의를 받아 번역 논문을 투고하여야 함.

라. 번역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해당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설명하는 번역자의 간단한 해설을 첨부할 수 있으며, 이 해설문은 번역논문과 같이 법학지에 발표됨.

마. 번역논문의 경우 번역의 적절성과 논문의 학문적 성가에 관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함.

3. 서평·논평·자료·산고·보고

법학지에는 국내외 학술저작에 관한 서평·논평과 학문적 가치가 있는 동서고금의 주요 자료를 비롯하여 법학연구와 교육현장의 단면을 깊은 성찰을 통해 저술한 산고 내지 보고를 게재할 수 있음. 그 학문적 성과와 법학지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2016. 5. 20. 개정>

법학지 원고 모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법학』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의 종류는 법학 전문분야에 관한 논문, 판례평석, 서평 등입니다. 『법학』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 권 발행일 약 60일 전입니다. 투고자격은 국내외 공인된 대학 교수, 법률분야 종사 전문인, 박사학위 소지자는 물론 현재 국내외 대학의 석·박사과정 재학생도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추천을 받으면 투고가 가능합니다.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양질의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법학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은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된 논문(판례평석 포함) 중에서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만 50세 미만 또는 부교수 이하인 투고자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논문 1편을 선정하여 매년 1회 시상하고 있습니다(상세는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제한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투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법학연구소 홈페이지(<http://lawi.snu.ac.kr>)를 참조하시거나, 법학연구소 간행부(02-880-5473)로 문의하십시오.

법학지 구독 회원 모집

서울대학교 『법학』의 구독회원을 모집합니다. 1959년 창간되어 현재 연 4회 간행하는 『법학』은 2017년 말로 통권 제185호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연간 구독회비는 40,000원이며, 기간본은 여분이 있는 경우 권당 12,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학』 구독회원 가입문의 : 02-880-5474

lrinst@snu.ac.kr

구독회비 송금 : 농협 079-17-058951 예금주 : 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
法 學

2019년 6월 제60권 제2호 [통권 제191호]

2019년 6월 22일 인쇄

2019년 6월 30일 발행

발 행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 행 인 정 궁 식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5471(행정실), 02-880-5473(간행부)

Fax: (02) 873-6269

e-mail: linst@snu.ac.kr

편집·인쇄 (주)청솔미디어

※ 본지에 게재된 諸論文의 내용은 當研究所의 의견이 아니며, 各筆者가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筆者 및 當研究所의 서면 허가 없는 無斷 掲載 금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기획하는 법학연구총서는 우리나라 법학(이론과 실무)과 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법학의 전분야에서 엄선하여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모노그래프 유형의 총서입니다 (경인문화사 출간).

●: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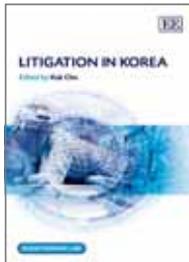
- | | |
|---|---|
| <p>1. 住宅의 競賣와 賃借人 保護에 관한 實務 研究(2005) 閔日榮 著 412쪽 20,000원</p> <p>2. 부실채권 정리제도의 국제 표준화(2005) 鄭在龍 著 228쪽 13,000원</p> <p>3.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2005) ● 권건보 著 364쪽 18,000원</p> <p>4.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법적 구조와 세계 (2007) 박훈 著 268쪽 13,000원</p> <p>5.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2006) ■ 홍명수 著 332쪽 17,000원</p> <p>6.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2006) ● 이현수 著 362쪽 18,000원</p> | <p>7.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2006) 이효원 著 412쪽 20,000원</p> <p>8.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2006) ● 안성조 著 440쪽 22,000원</p> <p>9. 행정계약법의 이해(2007) ● 김대인 著 448쪽 22,000원</p> <p>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2007) ● 최문희 著 370쪽 18,000원</p> <p>11.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 (2007) ● 조지만 著 428쪽 21,000원</p> <p>12.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2007) ● 박성수 著 528쪽 26,000원</p> <p>13. 채권자대위권 연구(2007) 여하운 著 288쪽 15,000원</p> <p>14. 형성권 연구(2007) ● 김영희 著 312쪽 16,000원</p> <p>15. 증권집단소송과 화해(2007) ■ 박철희 著 352쪽 18,000원</p> <p>16. The Concept of Authority (2007) 박준석 著 256쪽 13,000원</p> <p>17. 국내세법과 조세조약(2007) 이재호 著 320쪽 16,000원</p> <p>18. 건국과 헌법(2008) 김수용 著 528쪽 27,000원</p> |
|---|---|

19. 중국의 계약책임법(2008) ●
채성국 저 432쪽 22,000원
20. 중지미수의 이론(2008) ●
최준혁 저 424쪽 22,000원
21.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2008) ●
이재민 저 484쪽 29,000원
22. 중국의 사법제도(2009) ■
정철 저 383쪽 23,000원
23. 부당해고의 구제(2009)
정진경 저 672쪽 40,000원
24. 서양의 세습가산제(2010)
이철우 저 302쪽 21,000원
25. 유언의 해석(2010) ●
현소혜 저 332쪽 23,000원
26.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2010) ●
이상덕 저 504쪽 35,000원
27. 미술가의 저작권(2010) ■
구본진 저 436쪽 30,000원
28. 독점규제법 집행론(2010)
조성국 저 376쪽 26,000원
29.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2010)
김석환 저 334쪽 23,000원
3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 대응(2011) 도경욱 저 316쪽 22,000원
31. 慰藉料에 관한 研究 - 不法行爲를 중심으로 - (2011) ●
이창현 저 420쪽 29,000원
32. 젠더관점에 따른 제노사이드규범의 재구성(2011) 홍소연 저 228쪽 16,000원
33.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2011)
권재문 저 388쪽 27,000원
34. 기후변화와 WTO 탄소배출권 국경조정(2011) ■ 김호철 저 400쪽 28,000원
35. 韓國 憲法과 共和主義(2011) ●
김동훈 저 382쪽 27,000원
36. 국가입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2011) 차민식 저 406쪽 29,000원
37.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 유럽연합 정채성 평가와 남북한 통합에의 함의 - (2012)
김용훈 저 338쪽 24,000원
38.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이성엽 저 313쪽 23,000원
39. 기능성원리연구(2012)
유영선 저 423쪽 33,000원
40.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2012)
김지평 저 378쪽 31,000원
41. 情報市場과 均衡 - 헌법 사회학적 접근 - (2013) 김주영 저 376쪽 30,000원

42.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국제적 이중처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 (2013) 김기준 저 352쪽 27,000원
43.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2013) ■ 이선희 저 351쪽 27,000원
44.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 (2013) 이민호 저 474쪽 33,000원
45.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 (2013) ■ 권태상 저 392쪽 30,000원
46. 동산·채권담보권 연구(2013) ● 김현진 저 472쪽 33,000원
47.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2013) ■ 이창수 저 312쪽 24,000원
48.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2013) 김소연 저 263쪽 20,000원
49.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2013) ■ 김상준 저 457쪽 33,000원
50.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2014) 이연갑 저 249쪽 19,000원
51. 프랑스의 警察行政(2014) 이승민 저 378쪽 28,000원
52. 민법상 손해의 개념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2014) 신동현 저 336쪽 26,000원
53.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 연구(2014) 구연모 저 372쪽 28,000원
54.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2014) 이은상 저 263쪽 21,000원
55.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2015) 구상엽 저 277쪽 22,000원
56. 헌법과 선거관리기구(2015) 성승환 저 436쪽 34,000원
57.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 (2015) 황계영 저 375쪽 29,000원
58. 서식의 충돌 - 계약의 성립과 내용 확정에 관하여 - (2016) 김성민 저 228쪽 18,000원
59.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2016) 이진수 저 413쪽 33,000원
60.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016) 이용 저 438쪽 33,000원
61.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2016) 이민열 저 457쪽 35,000원
62.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2017) ● 강지은 저 314쪽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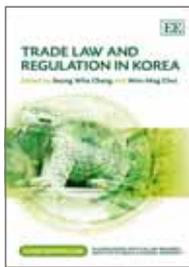
- | | |
|---|--|
| 63.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2017) ■ 김정연 저 455쪽 34,000원 | 73.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2017)
이윤제 저 399쪽 32,000원 |
| 64.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 통합(2017)
김완기 저 381쪽 29,000원 | 74. 상계(2018)
김기환 저 471쪽 35,000원 |
| 65. 조인트벤처(2017)
정재오 저 345쪽 27,000원 | 75.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2018) 임광섭 저 368쪽 29,000원 |
| 66.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2017)
김해마중 저 354쪽 26,000원 | 76.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2018) 박재윤 저 314쪽 25,000원 |
| 67.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17) 민수현 저 342쪽 26,000원 | 77.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2018) 나지원 저 238쪽 20,000원 |
| 68.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2017)
최지선 저 443쪽 37,000원 | 78.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2018)
임상혁 저 346쪽 27,000원 |
| 69.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2017)
이현 저 431쪽 35,000원 | 79. 방어적 민주주의(2018)
김종현 저 343쪽 25,000원 |
| 70. 북한 경제와 법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2017) 장소영 저 360쪽 28,000원 | 81. 실손의료보험 연구(2019)
박성민 저 395쪽 28,000원 |
| 71.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2017)
이상훈 저 294쪽 25,000원 | 82. 사업신탁의 법리(2019)
이영경 저 343쪽 25,000원 |
| 72.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2017) 백승엽 저 381쪽 29,000원 | 83.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2019)
오택립 저 375쪽 28,000원 |
| | 84.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2019)
신혜원 저 274쪽 20,000원 |

Elgar Korean Law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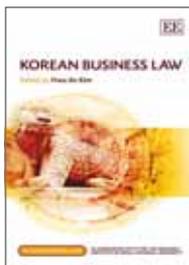
Litigation in Korea, Edward Elgar Pub
(June 2010)

Edited by Kuk Cho,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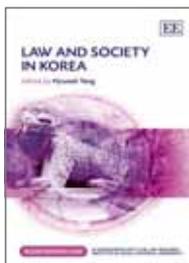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Edward Elgar Pub (April 11, 2011)

Edited by Seung Wha Chang,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nd Won-Mog Choi, Professor of Law,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Korean Business Law, Edward Elgar Pub
(October 31,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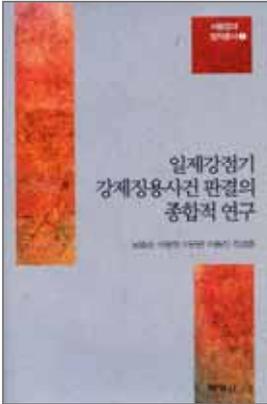
Edited by Hwa-Jin Kim,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Korea.



Law and Society in Korea, Edward Elgar Pub
(February 28, 2013)

Edited by Hyunah Yang,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서울법대 법학총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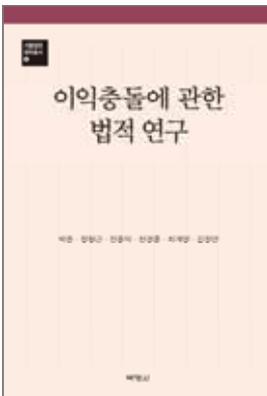
서울법대 법학총서 제1권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지원을 받아 2012년 공동연구의 성과로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2014. 12)가 출간되었습니다(남효순, 석광현, 이근관, 이동진, 천경훈 공저). 본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인노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미수금청구소에 대하여 대법원의 2012년 5월 24일 (2009다68620)과 그 후의 일련의 판결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으로부터 제2장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일본판결의 승인가부, 제3장 강제징용사건의 준거법, 제4장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5장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제6장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납용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제7장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법대 법학총서 제2권으로 조국 교수의 『절제의 형법학』이 출간되었습니다(초판 2014. 12; 제2판 2015. 5). 본서는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저자는 한국의 현실에서 형법의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진단한 뒤, ‘헌법적 형법’ 사상의 관점에서 ‘절제의 형법학’, ‘겸역의 형법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 형법 주제를 분석한 저자의 연구 중 25편을 선별하여 보완·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사형폐지론에서부터 낙태 비범죄화론, 학교체벌의 문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성매매와 공연 음란죄의 문제, 초·중·고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범죄화 비판 등을 담고 있는데, 이들 주제는 모두 학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차원에서도 화염성이 강한 주제들로 향후 우리사회에서 관련 주제들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서울법대 법학총서 제3권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지원을 받아 2016년 공동연구의 성과로서 『헌법과 사법』(2018. 5)이 출간되었습니다(윤진수, 권영준, 김형석, 이동진 공저). 본서는 헌법과 사법의 관계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민법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니다. 본서에서는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제1장),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제2장),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제3장),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제4장),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제5장)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법대 법학총서 제4권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지원을 받아 2016년 공동연구의 성과로서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2018. 5)가 출간되었습니다(박준, 정형근, 전종익, 천경훈, 최계영, 김정연 공저). 본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의 이익충돌의 현상을 확인하고, 법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의 소산입니다. 본서에서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제1장),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제2장), 법관의 이익충돌(제3장), 변호사의 이익충돌(제4장), 회사에서의 이익충돌(제5장), 금융회사의 이익충돌(제6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